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건 설 기 술 진 흥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는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성 때문에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발주청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다만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조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 상 논란이 있어 현장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

3. 주요내용

가. 재해 복구 등 긴급하게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이 포함됨을 명확화(안 제67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2항제2호 중 “건설공사”를 “건설공사(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재해복구사업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7조(건설공사의 시행과정) ① (생략)	제67조(건설공사의 시행과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<u>건설공사</u>	2. ----- ----- <u>건설공사(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재해복구사업을 포함한다)</u>
3. ~ 5. (생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564 (044) 201 - 3565